

공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I. 들어가는 말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9년 초 여성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체포되면서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인성을 상실하고 인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자에 대하여 인격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몇몇 언론에서는 실명과 함께 얼굴을 공개하기도 하였다.¹⁾ 그렇지만 비록 살인범이라 하여도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적용을 받고 인격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얼굴 공개 등과 같이 형사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개진되었다.

형사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은 여과 없이 이를 보도하였고,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도 이에 대하여 그리 부정적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얼굴공개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피의자의 초상권침해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얼굴공개가 금지되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얼굴공개금지를 국가기관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직무규칙을 개정하여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²⁾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가 차단되면서, 2004년 유

1) 당시 조선일보 등에서는 범죄예방이란 공익차원에서 강호순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다(조선일보 2009. 2. 6. 자 참조).

2) 경찰청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51호)을 제정하여 제85조에 초상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영철 사건이나 2006년 정남규 사건 등과 같이 연쇄살인범의 경우 얼굴을 가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물론 이런 연쇄살인범뿐만 아니라 아동성범죄자나 또 다른 흉악범죄자의 얼굴도 언론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사회적으로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소위 유명인사, 즉 정치인이나 경제계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기관은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흉악범죄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이란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흉악범 등과 같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원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법부에 의하여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격의 주체로서 인격권을 보장받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형사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찬반의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이를 보는 시각이 서로 상이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피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향유자란 점에서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흉악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도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형사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여전히 공개와

비공개의 양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자의 기본권이 상호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우선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자리 잡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양자의 보호범위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공익과 범죄의 보도

1. 기본권의 제한요소로서 공익

(1) 공익의 의의

일반적으로 공익(公益)이란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말한다. 즉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지칭하는 사익(私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³⁾ 또한 공익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국익과도 용어와 구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공익이 국가공동체의 이익인 국익과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실정법에서 공익은 공익법인 내지 공익사업 등 용어의 앞에서 부가되어 수식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에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공익을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78700>.

법률은 공익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을 통하여 공익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공익은 공공복리만이 아니라 공공의 전체 이익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질서유지 등도 넓은 의미에서 공익에 속한다 보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공익사업은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직접적으로 공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제4조에 열거된 사업을 통하여 공익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즉 동 법 제4조는 제1호부터 제8호에 걸쳐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저수지·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 등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공익이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⁴⁾

이상과 같이 법률은 공익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을 통하여 공익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공익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때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찾아보면, 공익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용어는 볼 수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2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행사는 공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헌법은 공공복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복리(public welfare)가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인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때,⁵⁾ 이는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공익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⁶⁾ 그런데 이미 법률에서도 보았지만, 공익은 공공복리만이 아니라 공공의 전체 이익이란 점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

4) 법률에는 이 외에도 공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수익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5) <http://100.naver.com/100.nhn?docid=15769>.

7) 학자에 따라서는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서 공익을 들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한 개념으로 공익을 이해하고 있다(강경근, 헌법, 2004, p.483.).

회의 질서유지 등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공익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⁷⁾

(2) 기본권의 제한요소로서 공익

현행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7조 제1항에 걸쳐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치국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성격상 헌법이 보장해야 할 권리라면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필두로 하여, 제11조에 평등권, 그리고 제12조 이하에서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과 사회권 등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들 중에서 그 성격이나 내용상 침해할 허용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지만, 헌법현실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헌법은 제37조 제2항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⁸⁾ 동 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들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은 국

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등으로 담보되는 공공의 이익과 공공복리 등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위 공익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⁹⁾

2. 보도의 자유와 범죄의 보도

(1)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이란 일반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좀 더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와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한다.¹¹⁾

언론의 자유는 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유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자유이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다양한 언론매체의 출현과 그 발전으로 인하여 단순히 사

8) 이런 의미에서 공익에 공공복리 외에도 질서유지를 포함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강경근, 헌법, p. 676. 참조.

9) 동 조는 특히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표현하여 헌법에 규정되었던,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이 갖는 성격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기본권은 한편에서 개인에게 전속된 주관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과 같이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본권은 법률상의 권리와 달리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전체 이익인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Zippelius/Würtenberger, Deutsches Staatsrecht, 32. Aufl., 2008, S. 181ff. 참조.

10)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EC%96%B8%EB%A1%A0>).

1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p.491.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다양한 언론매체의 출현과 그 발전으로 인하여 단순히 사상이나 그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스권, 알 권리, 언론기관의 설립 및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스권, 알 권리, 언론기관의 설립 및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¹²⁾

언론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체를 통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각종의 정보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언론기관의 자유가 중요한 자유로 등장하게 되었다.¹³⁾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언론기관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설립의 자유와 함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후자에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편집·편성의 자유와 보급의 자유¹⁴⁾ 등이 포함된다.¹⁵⁾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자유를 말한다.¹⁶⁾ 보도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등에 의한 소식이나 정보의 전달도 보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신문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¹⁷⁾ 또한 그런 점에서 보도의 자유는 뉴스 등의 보도뿐만 아니라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배포의 자유까지 포함한다.¹⁸⁾

(2) 언론의 현대적 기능과 범죄의 보도

언론의 자유는 중세 이후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형성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군주주권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의 기초하에 국민주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몽주의에 힘입은 근대시민사회를 통하여 중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근대 입헌주의를 통하여 성문헌법이 등장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¹⁹⁾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교환·전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12) Maunz/Dürig/Scholz, Grundgesetz, Art. 5 Rn. 69ff.

13) 이는 언론의 자유가 단지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인 발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전파하는 전달의 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참조.

14)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병합).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p.503.

1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6916900> 참조.

17) 물론 이것은 일종의 용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18) 성낙인, 헌법학, 2009, p.523.

19) 예를 들면 1776년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2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1791년 미국 연방헌법 증보 제1조.

써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대에 오면서 언론의 자유는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의사 소통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격체로서 인격을 발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실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²⁰⁾ 또한 언론의 자유는 공동체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질적 다원성과 그에 기초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등 공동체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기능한다.²¹⁾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개개인은 민주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능도 갖는다.²²⁾

오늘날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기능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매스미디어로 불리는 대중매체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관심도를 촉발시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범죄기사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가 범죄를 보도하는 것은 소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선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 자체가 공공적이고 합법적인 주제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범죄보도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언론매체의 공적 과제라

는 것이다.²³⁾

범죄의 보도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항인 범죄피의자의 수사과 체포, 구속과 기소 및 재판, 범죄의 원인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의 보도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위반 시의 법적 제재의 방법과 구체적인 실현의 내용 등을 전달하며,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²⁵⁾ 이렇게 범죄의 보도는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중요한 공적 과제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다.²⁶⁾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의 보도는 범죄의 행태를 알림으로써 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위법행위와 관련 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의 규범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범죄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기관의 처리과정을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작용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범죄에 대하여 형성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²⁷⁾ 이렇게 언론매체의 범죄보도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하고 선정적인 보도의 경우 여론을 오도하고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오보의 경우에는 관련 당

20)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21) 강경근, 헌법, p.647.

2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참조.

23)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2004년 봄), p.89.

24)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2009), p.69.

25) 대판 1998. 7. 14. 96다17257 참조.

26)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p.70. 이하.

27)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동성범죄자에서 볼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을 참작하여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09. 11. 25.자 인터넷판.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그렇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면 일반 국민과 달리 제한되는 기본권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사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범죄보도는 범죄자와 피해자 등과 사건의 주변 인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정적인 기능도 크다.

III. 범죄피의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1. 범죄피의자의 기본권과 무죄추정원칙

(1) 범죄피의자의 기본권

일반적으로 범죄피의자란 형사피의자를 일컫는 용어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수사개시 이후 공소제기 이전에 있는 자를 말한다.²⁸⁾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범죄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면 일반 국민과 달리 제한되는 기본권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피의자가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기본권이 있다. 특히 범죄피의자와 관련하여 헌법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권리들과 법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²⁹⁾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는 범죄피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에 의하여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묵비권, 제3항에서 의해서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제4항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6항에 의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외에도 형사피의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과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기본권도 갖는다.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p.434.

29) 본고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 대신 범죄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무죄추정원칙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범죄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를 무죄추정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직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의자의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³⁰⁾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야 하고,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³¹⁾ 또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유죄를 예단하여 무리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필요 이상의 모욕적 언행이나 강압적 태도 등 강제조치 등도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³²⁾ 그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³³⁾

이렇게 헌법이 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피의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의 보도에 있어서도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보도가 아니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의 침해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격권이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아니고,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인격권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인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 등을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³⁴⁾ 즉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하여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권리는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는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 등에서 찾는다.

범죄보도는 범죄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보도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로 인하여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보장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범죄피의자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 초상이나 성명이 공개되었고, 심지어는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에 대한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익명보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청의 경찰관 직무규칙 제85조에 초상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든지,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30) 권영성, 헌법학원론, p. 435. 참조.

3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

32) 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참조.

33) 헌재 1997. 5. 29. 96헌가17.

34) 권영성, 헌법학원론, p. 449.

알 권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위에서 재구성한 것.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알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보장하고 있다.

제정하면서 제5조에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인격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³⁵⁾

IV.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원공개와 그 한계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1) 알 권리의 의의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보는 헌법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알 권리(right to know)는 인류사회가 정보사회로 진전되면서 등장한 인간의 권리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알 권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위에서 재구성한 것이다.³⁶⁾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알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보장하고 있다.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알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집,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Informationsfreiheit)라고도 한다. 알 권리가 20세기 후반 하나의 기본권으로 등장한 것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³⁷⁾ 근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한 표현의 자유는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정보

35) 범죄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대해서는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p.74. 이하 참조.

36) 김효진, 표현의 자유, 동아법학 제24호, p.330. 이하.

37) 물론 알 권리의 등장배경에는 현대 국가에서 국가기밀이 증대되는 요인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전달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중요한 정보원이었던 신문에서 방송으로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과거 일방적이었던 정보전달체계는 다양하게 발전하는 미디어에 힘입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되던 정보가 정보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체계가 형성되면서 정보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³⁸⁾ 통신의 발달로 일방적이던 정보의 전달이 쌍방향화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로 등장한 것이다.

정보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알 권리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이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³⁹⁾ 전자는 알 권리의 소극적 의미이고 후자는 알 권리에 대한 적극적 의미를 말한다.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학계의 견해를 보면 알 권리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알 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개념을 보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⁴⁰⁾

이와는 달리 알 권리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계하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

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⁴¹⁾ 이 외에도 알 권리를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로 그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알 권리를 정의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⁴²⁾

알 권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³⁾

(2) 알 권리의 기능

알 권리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으로 등장한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여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한다는 것에 있다.⁴⁴⁾ 그런 점에서 알 권리는 우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그 발전을 꾀하는 기능을 갖는다.⁴⁵⁾ 그 다음 알 권리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기능을 행사하며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알 권리는 사상이나 의사

38) 성낙인, 헌법학, 2009, p.552. 이하 참조.

39) 강경근, 헌법, p.658.

40) 권영성, 헌법학원론, p.496.

41) 정종섭, 헌법학원론, p.563.

42) 성낙인, 헌법학, p.552.

43) 헌재 1989. 9. 4. 88헌마22.

44) BVerfGE 7, 198 (208).

45) 헌재 1989. 9. 4. 88헌마22.

학설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 역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체 내에서 제한은 피할 수 없다.

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움을 구체화시킨다. 이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알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나아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접근과 수집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3) 알 권리의 내용과 제한

알 권리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⁴⁶⁾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가 정보원에서 나오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받아들이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⁴⁷⁾ 정보수령자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타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정보수집권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수집의 자유가 포함되는 권리이다. 이는 정보의 수집에서 국가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보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언론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의 제공도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알 권리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선별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의 자유가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알 권리에는 정보를 선별하여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⁴⁸⁾

알 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전제로 하여 정보공개 원칙이 인정된다.⁴⁹⁾ 그래서 알 권리에는 정

46) 정중섭, 헌법학원론, p.567.

47) Hofmann-Riem, Art. 5, in: Grundgesetz-AK, 2. Aufl., 1989, Rn. 82.

48) 헌재 1998. 10. 29. 98헌마4.

49) 강경근, 헌법, p.660.

보를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등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에는 국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일반인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일정한 범위 내의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⁵⁰⁾

학설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 역시 기본권이란 점에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체 내에서 제한은 피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알 권리도 이 조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도 개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지위에서 일정한 제약을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인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¹⁾

2. 이익형량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에의 한계

언론매체에 의하여 범죄가 보도되는 경우, 이를 공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범죄피의자의 신원

공개문제가 등장하게 된다.⁵²⁾ 여기서 신원이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인 신분이나 평소 행실, 주소, 원적, 직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⁵³⁾ 신원공개란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초점이 되는 것은 초상과 성명에 관한 것이다.

범죄보도에서 범죄피의자의 초상과 성명 등 신원공개는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미 본 것처럼 범죄피의자는 구속과 기소단계를 거쳐 사법부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격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범죄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인격권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범죄피의자의 초상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보도에서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범죄피의자에 관한 보도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기관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피의자의 기본권 간에 충돌문제

50) 정종섭, 헌법학원론, p.568. 이하 참조.

51)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52)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 총기살인범 내지 미수범의 경우 보도로 인한 공익이 더 크고 대중의 관심도가 크다면 얼굴공개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2004년 서울 서래마을에서 자신의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프랑스 부부의 얼굴과 성명을 언론에서 그대로 공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살인범 등의 얼굴은 공개하고 있다.

5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3873700>.

공공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한하여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공개를 통하여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얼굴공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다투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충돌문제는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선택하고 다른 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한 쪽의 우위를 그 사안에서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헌법이 보장한다고 하여도,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신원공개 대상인 범죄피의자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한 공인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였기 때문에,⁵⁴⁾ 공인의 경우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의 보호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범죄피의자의 경우 공인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범죄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원칙의 대상으로 공인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의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부수적인 공적 인물로 보아야 하고,⁵⁵⁾ 익명보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쇄살인범과 같은 반인륜적·반사회적 사건의 범죄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공적 관심을 극대화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범죄피의자의 인격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이익형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체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하여 범죄피의자에 대한 인격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때에도 최소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성명과 초상에 대한 제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공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한하여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공개를 통하여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얼굴공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신상정보 중에서 얼굴과 성명 정도의 공개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있어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자유로서 이 역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고 위헌성을 배제하기

54)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55) 김태수, 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6), p.420.

위해서 엄정한 기준하에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성과 공익성의 관점에서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즉 그 대상을 테러범죄나 연쇄살인범죄와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국한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여 객관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의 절차나 형식 등 방법과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V. 맺음말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혹 범죄피의자라 하여도 헌법에 의하여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특히 형벌권이 국가에 위임되어 있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범죄피의자는 사법부에 의하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고 인격권이 보호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즉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도 인격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기본권도 그 본질을 훼손되지 않는 한 제한을 받는다. 물론 그 제한의 범위는 규범과 현실의 틈 속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원공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는 현행 법질서하에서 국가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은 어렵다. 헌법은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의하여 유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소위 공인이론에 의하여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의 경우, 국가기관의 태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를 찾아내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원공개는 금지된다. 다만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의 경우는 얼굴이나 성명 등 인격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2004년 봄), pp.88~120.
- 김태수, 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공법연구 제35집 제호 (2007. 6), pp.407~432.
- 노기호,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한양법학 제6집, pp.309~320.
- 박도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 -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8. 4), pp.171~195.
-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pp.68~86.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 이승선 · 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2009), pp.65~94.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 Gronau, Kerstin, Die Meinungsfreih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NJW 1995, 1697ff.
-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 20. Aufl., Heidelberg, C. F. Müller, 1999.
- Hubmann, Heinrich, Grundsätze der Interessenabwägung, AcP 155 (1956), S. 85ff.
- Jarass, D. Hans/Pieroth, Bodo(Hrsg.),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8. Aufl., München, C. H. Beck, 2006.
- Jarass, Hans, D., EU-Grundrechte, C. H. Beck, München, 2005.
- Maunz, Theodor/Dürig, Günter/Scholz, Rupert(Hrsg.),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Stand 1995.
- Richter, von Ingo/Schuppert, Gunnar Folke, Casebook Verfassungsrecht, 3. Aufl., München, C. H. Beck, 1996.
- Schmitt Glaeser, Walter, Meinungsfreiheit und Ehrenschaft, JZ 1983, 95ff.
- Scholz, Rupert/Konrad, Karlheinz, Meinungsfreiheit und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 Zu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AöR 123 (1998), S. 60ff.
- Stein, Ekkerhart/Frank, Götz, Staatsrecht, 20. Aufl., Mohr Siebeck, Tübingen, 2007.
- Zippelius, Reinhold/Würtenberger, Thomas, Deutsches Staatsrecht, 32. Aufl., München, C. H. Beck, 2008.